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1.

발 의 자 : 정태호 · 허성무 · 오세희
이정문 · 김 윤 · 윤준병
김영환 · 서미화 · 김교홍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·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,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한편, 직업소개·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, 연령, 종교, 신체적 조건,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직업소개·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에도, 현행 균등처우 조항에는 “장애”가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“장애”를 명시함으로써 직업

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,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법률 제 호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종교”를 “종교, 장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균등처우) 누구든지 성별, 연령, <u>종교</u> , 신체적 조건,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	제2조(균등처우) ----- ----- <u>종교, 장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